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 번호 | 10051 |
|----------|-------|

발의연월일 : 2025. 4. 23.

발의자 : 강선우 · 허성무 · 김한규

김교홍 · 강훈식 · 김윤덕

서미화 · 장종태 · 정동영

김성희 · 박지원 · 김준혁

백혜련 · 박수현 · 박홍근

박해철 · 허영 · 이수진

김현정 · 허종식 · 김원이

김병기 · 진성준 · 복기왕

김현 · 이기현 · 김용만

정일영 · 이재관 · 김승원

김민석 · 강준현 · 윤건영

박성준 · 전현희 · 김남근

차지호 · 고민정 · 김문수

맹성규 · 이학영 · 권향엽

염태영 · 황희 · 윤종군

김영배 · 추미애 · 박상혁

이해식 · 송옥주 · 조승래

서삼석 · 이용선 · 주철현

홍기원 · 정진욱 · 남인순

오세희 · 서영석 · 김선민

김남희 · 소병훈 · 안도결

김윤 · 정혜경 · 박은정

전종덕 · 윤종오 · 박희승
신정훈 · 한준호 · 어기구
전재수 · 이원택 · 박 정
김종민 · 김주영 · 정태호
박용갑 · 손명수 · 박균택
김병주 · 김영호 · 한병도
이재강 · 김태선 · 신영대
이개호 · 임미애 · 전진숙
윤후덕 · 강득구 · 이병진
장철민 · 안규백 · 위성곤
양부남 · 김영환 · 문금주
문정복 · 김우영 · 한민수
노종면 · 박주민 · 김태년
윤호중 · 이언주 · 조정식
민병덕 의원(109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는 희귀난치성질환자를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 또는 제조된 물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관세법」에서는 면제 대상을 시행규칙에서 한정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희귀난치성질환자들이 공급받아야 하는 의약품에 대한 재정적인 부담을 완화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임.

이에 「관세법」과 함께 현행법을 개정하여 희귀난치성질환자를 위

한 의약품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하려는 것
임(안 제106조제1항제10호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선우의원이 대표발의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1005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1항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관세법」 제91조제4호의2에 따른 의약품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가가치세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제1항제10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 | <u>의2에 따른 의약품</u> |
|----------------|--------------------|
| 11. ~ 13. (생약) | 11. ~ 13. (현행과 같음) |
| ② ~ ⑤ (생약) | ② ~ ⑤ (현행과 같음) |